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(90,750평)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설치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
- 이 때 납부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(안 제4조 ~ 제5조)
-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(안 제6조)
- 전용금지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『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-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 은
 - 『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,
대규모 택지개발(30만제곱미터 이상)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관리·운용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,
 - 검토결과,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